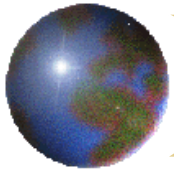


# 상법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4. 18.





# 총론



상법(회사법)의 목적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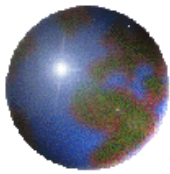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지배구조 관련 회사법의 역할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구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 I: 상법(회사법)의 목적과 기능

## 회사법의 목적

- 회사법이 달성하여야 하는 최우선적인 과업은 바로 회사가 회사에 관계된 자들이 각자 맡은 바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

\* Solomon et al., Materials and Problems on Corporations: Law and Policy (1994).

- 회사법의 목적은 주주의 부(富)를 최대화하는 데 있음 \*

\* Easterbrook &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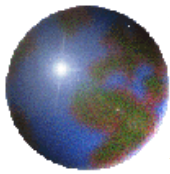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 회사법의 기능

- 회사법은 경영자와 주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John Amour et al, The Anatomy of Corporate Law (2009).

- 회사법을 통해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기업이 생산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인 까닭에 조직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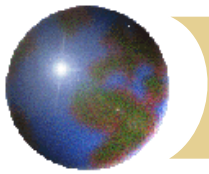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Fama & Jensen, Separation Ownership and Control, 26 Journal of Law & Economics (1983).



## II: 지배구조 관련 회사법의 역할(1)

### 기업지배구조의 모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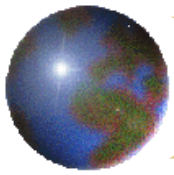
- 회사지배구조에서 권한분배, 특히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 어떻게 권한분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개개 회사가 검토하여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회사법은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
- 예컨대, 이사의 선임권이 주주총회에 부여되어 있고,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결정권이 주주총회에 부여한다는 식의 모델을 제공함
- 표준적인 권한분배의 모델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내의 지배구조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식의 잠재적 취득자 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외의) 종업원 또는 채권자와 같은 제3자(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기여함
- 회사가 표준형의 지배구조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회사법은 지배구조에 관한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배구조 관련 회사법의 역할(2)

### 사적 계약에 대한 보완적 역할

- 통상적인 주인-대리인의 모델(agency model)에 따르면 주인은 임금(보수)계약에 의하여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계약만으로는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그러한 통제가 용이하다면 주인 측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위임을 실시하기 편하게 됨
-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 경우 대리인인 이사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문제될 수 있어, 회사법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계약 혹은 사적 합의를 보완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예컨대, 이사의 책임을 엄하게만 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책임이 엄하기 때문에 이사가 안전한 결정만을 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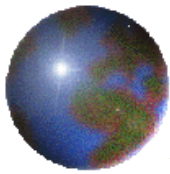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 Ⅲ: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구제: 현행 제도

### 이사의 책임추궁

- 이사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주주는 집단행동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와 무임승차(free-riding)의 선호성향으로 인하여 소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이른바 월가의 원칙(Wall Street Rule)의 팽배

### 기업지배권시장

- 부정직하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는 일종의 징계효과로 인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회사라는 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경영진에게 이전됨으로써 사회의 부(富)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적대적 M&A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하여 경영진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보다는 단기적 업적에 매달리는 성향(short-termism)을 노정함



# IV.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 국내외 평가

### ◆ [국내 주요 상장사 지배구조 등급 현황\* (단위: 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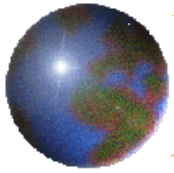
S	A+	A	B+	B	C	D	합계
0(0.0)	13(1.9)	30(4.3)	111(16.0)	308(44.4)	223(32.1)	9(1.3)	694(100)

\* 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14.8.13) (S 등급에 가까울 수록 주주가치 훼손의 가능성이 낮아 짐).

□ 상장회사 77.8%의 지배구조가 B 등급 이하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매우 미흡한 형편

◆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2014 마켓랭킹]  
1위(홍콩, 싱가포르), 3위(일본), 4위(태국, 말레이시아), 6위(대만), 7위(인도), 8위(한국), 9위(중국), 10위(필리핀, 인도네시아)

□ 아시아 권에서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순위상 하위권에 있는 까닭에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하락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됨



# 각론



주주의 주권발행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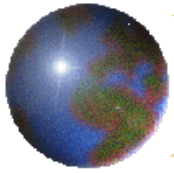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



주주총회 결의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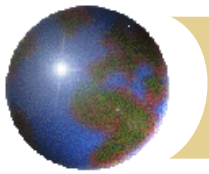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준법지원인의 선임



# I : 주주의 주권발행청구(1)

## 주권불소지제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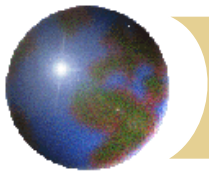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주주의 권리행사에 반드시 주권의 소지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권 발생으로 인한 주권분실 및 도난 우려, 그로 인한 재발행절차의 번거로움 및 제3자의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잃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상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가 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제358조의2 제1항)
- 주주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든 후이든 위의 신고할 수 있음
- 주권발행전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58조의2 제2항)
- 주권발행후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는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 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함(제358조의2 제3항)



## 주주의 주권발행청구(2)

### 주주의 주권발행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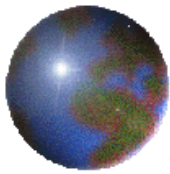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 주권불소지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매도 또는 담보목적 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권이 필요하므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을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358조의2 제4항)
- 현행법상 주권없는 주식의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을 처음부터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상법 제338조의2 제4항은 회사의 정관에 이 제도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지 않은 채 그간 주권발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입혀질 수 있음



# 주주의 주권발행청구(3): 개선 방안

##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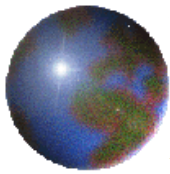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는 장기에 걸쳐 주권을 처분할 의사가 없는 고정주주(대부분의 대주주 혹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임
- 상법은 주권불소지제도와 관련하여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635조 제1항 제20호)
- 현행 상법은 "제35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만 과태료에 처하기 때문에 (제635조 제1항 제19호) 주권불소지신고 후 주권발행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없음
- 고정주주가 아닌 주주(예컨대, 소수주주)가 주권불소지신고를 한 이후에 주권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I: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1)

###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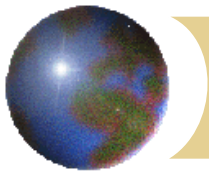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보유함(제366조의2 제2항)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데(상법 제366조의2 제3항), 이러한 의장의 권한은 주주총회에서 이른바 총회꾼에 의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주주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 주주총회의 진행은 상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총회결의에 의하고, 그것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관습 및 회의의 일반원칙에 의함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2)

### 주주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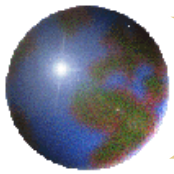
- 주주가 투자한 재산은 회사에 귀속하게 되어 주주는 자신의 투자에 대해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회사는 주주의 소유에 속하며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한 투자의 정도에 비례한 지분(equity)을 가지게 됨
- 주주는 이 지분으로 인하여 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를 가진 위험인수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궁극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점함
- 결국 이러한 법적 지위는 투자로 인한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한데, 여기서의 지분을 법률적으로는 주주권이라 하므로 주주권은 소유권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익권의 확보가 가능한데, 그 이유로서는 회사의 경영자의 입면사향과 관련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획득과 증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으며 획득한 이익의 분배도 주주의 의결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3)

## 1주 1의결권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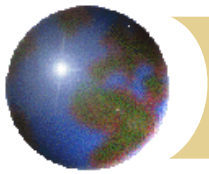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상법 제369조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주 1의결권의 원칙" 이라 함
- 이 원칙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성하는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되고 있음
-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주간의 합의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상법상 조항으로는 종류주식제도(제344조), 단주의 처리(제443조), 회사의 자기주식, 상호보유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2항·제3항), 총회결의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결권 제한(제368조 제3항), 감사선임시의 의결권 제한(제409조 제2항) 등이 있음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4): 실제사례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39998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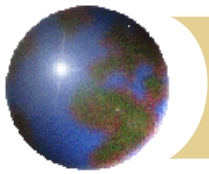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A를 제외한 회사의 사실상의 유일한 주주인 B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주주총회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개최시각으로 통지된 10시 정각에 A측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아니하였으면 먼저 A측의 의결권 행사가 그 안건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 표결한 후 마지막으로 A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그 안건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 A와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 표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A가 총회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B는 자신이 주주총회의 의장이고 A를 대리한 C가 주주총회의 개최시각 무렵에 피고 회사 건물에 도착하여 회의장 입장이 수분간 지체됨을 기회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A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봉쇄한 채 안건을 표결하여 가결처리하였으니, 위와 같이 회사측이 C의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장 입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체시킨 점,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식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5): 실제사례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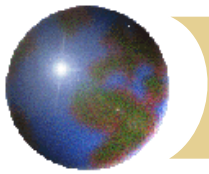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의장인 A가 정관변경의안의 표결에 앞서 반대하는 주주 이외에는 모두 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다음 반대하는 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수만을 확인한 후 의안이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데에는 주주의 의사 표시를 왜곡하는 표결방식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의방식의 불공정은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사는 "찬성" 과 "반대,"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권" 도 가능하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찬성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의안에 대하여 특정한 의안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의안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의안에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6): 실제사례

## 인천지법 2000.4.28. 자 2000카합427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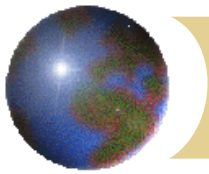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일부의 주주만이 참석할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
- "비록 신청인들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의안의 내용이나 의사진행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방해하고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측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정도의 의결권을 이미 위임받은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쳤더라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왔을 것임이 쉽게 예상된다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 또는 회의 과정 중에 의견을 조정하고 끈기있게 설득과 대화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연기하거나 회의시간을 연장하여 발언과 의견제시 및 표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안건처리를 선언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7): 실제사례

수원지법 1999. 12. 29. 선고 99 가합 9571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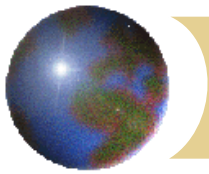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의사진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당연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심의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되도록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는바,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내용과 질의 내용,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의장이 정한 심의 및 표결방법에 대하여 주주들이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하자하는 동기가 제출되고 그 동기가 성립하면 의장은 총회에 물어 그 결의로서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안건을 가결한 경우에 있어 그 결의는 의사진행방식 내지 결의방법이 신의칙에 반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8): 문제점

## 의장의 불공정한 의사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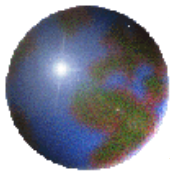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 "주주총회에서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는 소액주주들로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참가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보장된 권리로서 소수자의 이와 같은 유일한 권리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지법 2000. 4. 28 .자 2000카합427 결정)
- 특히 의장이 주주총회에서 표결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현저하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특정한 주주의 퇴장을 명하는 경우 그 퇴장당한 주주는 의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실상 의장에 의하여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 의장의 불공정한 의사진행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될 뿐이며, 이러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야 함(제376조 제1항)



# 주주총회 의장의 전횡 방지(9): 개선 방안

##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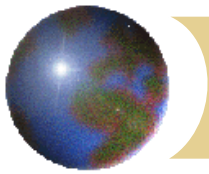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제 소제기 기간을 놓쳐버릴 우려가 있음
-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가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동안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혹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의장이 계속 해서 의장직을 수행할 우려가 있음
- 취소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의장의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상법상 규정이 없음
- 따라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한 주주총회 의장에 과태료에 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Ⅲ: 주주총회 결의의 이행(1)

### 주주총회의 기능

- 주주총회는 소유에 의해서 경영을 통제하는 장(場)이며, 그러한 경영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임
-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소집의 유무에 따라 주주의 경영간섭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경영간섭을 차단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능을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경영권능을 이사회에게 부여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창출하게 됨
- 주주총회는 의사결정기능,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정보의 개시기능, 그리고 주주와 경영자사이 또는 주주간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을 수행함
- 이와 같은 기능 때문에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개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가 원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유인까지 있음



# 주주총회 결의의 이행(2): 실제 사례

## S회사의 감사선임 사례

- S 회사는 주주제안에 의해 주주총회결의에서 선임된 감사와 임용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출근을 저지함에 따라 감사로 선임된 자가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고판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11.8. 자 2005마541 결정).
- 상법은 '감사 인원수 미달시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635조 제1항 제8호)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는 임용계약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주주총회 결의의 이행(3): 전망

## 주주제안권의 활성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조사대상기업 1,728개사 중에서 2015년 에 총 36사에서 116건의 주주제안이 확인 되었고, 이는 2014년에 비하여 약 2.8배 증가한 것이라고 함\*

\* 이다원 외, 주주제안 현황 및 제도 실태 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Vol. 7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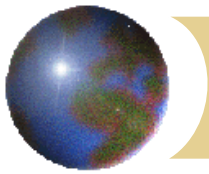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이데일리(2016.4.5.)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아래의 표에 따르면 2016년 3월 주주총회 안건기준으로 코스닥 상장회사 14개사에서 주주제안이 있었으며, 그 중 20.6%에 해당하는 회사에서만 그 주주제안이 최종 가결되었다고 함

주주제안 가결 비중 및 발의 내용 (단위 : %)

※ 3월 주주총회 안건 기준

2015년(17개사)				2016년(14개사)			
가결	18.6	정관변경	7.1	가결	20.6	정관변경	14.7
부결	58.6	배당	10	부결	50	배당	14.7
미상정	8.5	임원선임	71.5	미상정	17.6	임원선임	58.9
철회	14.3	기타	11.4	철회	11.8	기타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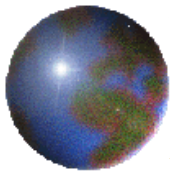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 주주총회 결의의 이행(4): 개선 방안

##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의 수단으로서는 크게 발언(voice)과 퇴출(exit)로 나눌 수 있는데, 주주제안권은 전자(前者)를 위한 제도인데,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이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주제안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V: 준법지원인의 선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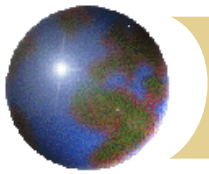
## 준법지원인 제도의 의의

- 상법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임직원의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관리하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함(제542조의13)

### ◆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대상회사	응답		미응답
		선임	미선임	
2012년 4월	172개사 (1조원 이상)	69개사 (60%)	46개사 (40%)	57개사 (33.2%)
2014년 4월	306개사 (5천억원 이상)	108개사 (49.5%)	110개사 (50.5%)	88개사 (28.8%)
2015년 4월	304개사 (5천억원 이상)	123개사 (60%)	82개사 (40%)	99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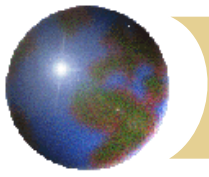
\* 출처: 민병두 의원 보도자료(2015.5.)



## 준법지원인의 선임(2)

###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 준법지원제도의 정비는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경우 회사의 실적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 제도를 진정하게 준수하려는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준법지원제도가 상법상 강행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상법상 벌칙이나 기타 불이익이 마련되지 않는 까닭에 준법지원인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히 이사들의 임무해태만 문제될 뿐임
-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9호·제10호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따라서 상법상 준법통제제도의 강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